

[별표 16] <신설 2014.12.8., 개정 2015.8.21., 개정 2016.7.1., 개정 2016.12.1., 개정 2017.4.1., 개정 2018.11.27., 개정 2019.10.24., 개정 2022.3.11., 개정 2023.10.04.>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관리대상 주요 중금속

유해물질명	사료의 종류		허용기준 (ppm)
남	배합사료	양축용, 섬유질, 대용유용, 애완동물용, 사육하는 동물용	10
		실험동물용, 수산동물용	20
		프리믹스용	100
	단미사료	곡류, 강피류, 박류, 서류, 콩류, 섬유질류	10
		단백질류, 조류, 플랑크톤류, 무기물류,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다량광물질류, 혼합광물질류(미량광물질류 합제를 제외)	30
		미량광물질류, 미량광물질류 합제	100
		기타 단미사료	20
	보조사료	규산염제	60
		기타 보조사료	별표 6 기준
불 소	배합사료	젖소용	30
		고기소용, 섬유질	50
		돼지용	100
		닭·오리용	250
		양축용(고기소, 젖소, 돼지, 닭, 오리용은 제외), 대용유용, 실험동물용, 애완동물용, 사육하는 동물용	300
		수산동물용	1,000
		프리믹스용	1,800
	단미사료	칼슘염류, 다량광물질류(칼슘을 포함한 것에 한함), 칼슘염류 합제	350
		단백질류(새우분 제외), 무기물류	500
		조류, 플랑크톤류(마이스시스슈림프, 알테미아, 크릴 제외)	1,000
		새우분, 마이스시스슈림프, 알테미아, 크릴	3,000
		인산염류, 다량광물질류(인산을 포함한 것에 한함), 인산염류 합제	인 함량의 1/100 이하
		다량광물질류(칼슘과 인산을 포함한 것을 제외), 미량광물질류, 혼합광물질류	1,800
		기타 단미사료	별표 5 기준
	보조사료	규산염제	3,000
		기타 보조사료	별표 6 기준
비 소	배합사료	양축용, 섬유질, 대용유용	2
		실험동물용, 애완동물용, 사육하는 동물용	10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12
		수산동물용 배합사료	20
	단미사료	무기물류(수산동물 유래를 제외),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다량광물질, 혼합광물질(미량광물질류 합제를 제외)	20
		단백질류(수산동물 유래에 한함-골뱅이분, 새우분, 어분, 어즙축착사료 등), 무기물류(수산동물 유래에 한함-어골분, 어골회, 패분 등)	25
		미량광물질류, 미량광물질류 합제	30

유해물질명	사료의 종류			허용기준 (ppm)	
		조류, 플랑크톤류		40	
		기타 단미사료		별표 5 기준	
	보조사료	규산염제		20	
		기타 보조사료		별표 6 기준	
수 은	배합사료	양축용, 섬유질, 대용유용, 수산동물용		0.4	
		실험동물용, 애완동물용, 사육하는 동물용		0.8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1	
	단미사료	조류, 단백질류(수산동물 유래에 한함-골뱅이분, 새우분, 어분, 어즙흡착사료 등), 무기물류, 플랑크톤류,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혼합광물질		1	
		기타 단미사료		0.5또는 별표 5 기준	
	보조사료	전체 보조사료		별표 6 기준	
카드뮴	배합사료	대용유용		0.5	
		양축용, 섬유질		1	
		실험동물용, 애완동물용, 사육하는 동물용, 수산동물용		2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15	
	단미사료	식물성		2.5	
		기타 단미사료		50또는 별표 5 기준	
	보조사료	전체 보조사료		별표 6 기준	
크 롬	배합사료	수산동물용		100	
	단미사료	동 물 성	어분, 어즙흡착사료, 혼합성 단미사료	100	
		단 백 질류	동물성단백질혼합분		300
주 석	배합사료	알루미늄 캔을 제외한 캔 제품에 한하며 산성통조림(pH가 4.6		150	
	단미사료	이하) 200 ppm이하이어야 한다.			

*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는 별표 5 및 별표 6에 중금속 허용기준이 제시된 경우 우선 그 기준을 적용한다.

*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단미·보조사료는 각각의 해당 사료범위 내 중금속의 최저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혼합성 단미·보조사료는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의 혼합비율을 적용하여 허용기준을 산정한다. 다만, 혼합비율을 사전에 표시하거나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혼합된 개별 성분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혼합비율로 환산한 기준을 적용한다.

2. 관리대상 주요 곰팡이독소

유해물질명	사료의 종류		허용기준 (ppb)
아플라톡신 (B1+B2+ G1+G2)	배합사료	양축용(어린송아지, 젖소용, 포유자돈·이유돈, 산란용·육용 어린병아리, 육계초기, 육계전기, 육용오리전기, 종오리용어린오리에 한함), 대용유용, 섬유질(어린송아지, 젖소용에 한함), 기타 어린동물 이용 배합사료	10
		기타 배합사료(프리믹스용 제외)	20
	단미사료	식물성(조류·섬유질류 일부·유지류·전분류·과실류·채소류·버섯류 제외), 혼합성(식물성이 혼합된 것에 한함), 남은음식물사료	50

유해물질명	사료의 종류		허용기준 (ppb)
오크라톡신A	배합사료	전체 배합사료(프리믹스용 제외)	200
	단미사료	식물성(조류·섬유질류 일부·유지류·전분류·과실류·채소류·버섯류 제외), 혼합성(식물성이 혼합된 것에 한함), 남은음식물사료	250

* 다만,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단미사료 중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가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성분등록 제외 사료)의 경우에는 곰팡이독소저감제(mycotoxin binder, 가급적 국내외에서 인증 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를 처리하고, 최종 배합사료가 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단미사료의 허용기준을 2배(아플라톡신 100 ppb, 오크라톡신 500 ppb)까지 허용한다.

*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료는 해당 곰팡이 독소의 최저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2의2. 관리를 추천하는 곰팡이독소

유해물질명	사료의 종류		관리수준 (ppb)
테옥시니발레논 (보미톡신)	배합사료	양축용(돼지용에 한함), 대용유용(양돈용에 한함)	900
		양축용(어린송아지, 젖소어린송아지, 비유초기, 어린사슴, 어린면양, 어린염소 등 어린 반추동물에 한함), 섬유질(어린 반추동물에 한함)	2,000
		기타 배합사료(프리믹스용 제외)	5,000
	단미사료	식물성, 혼합성(식물성이 혼합된 것에 한함), 남은음식물사료	10,000
제랄레논	배합사료	양축용 돼지(포유자돈·이유돈, 번식용모돈, 임신돈, 포유돈에 한함), 대용유용(양돈용에 한함)	100
		기타 양축용 돼지(육성돈, 비육돈 등에 한함)	250
		반추동물용(양축용·섬유질, 사육하는 동물 등에 한함)	500
		기타 배합사료(양축용 돼지, 양돈용 대용유, 반추동물용, 프리믹스용 제외)	1,000
	단미사료	식물성, 혼합성(식물성이 혼합된 것에 한함), 남은음식물사료	3,000
푸모니신 (B1+B2)	배합사료	양축용(돼지, 말, 토끼에 한함), 대용유용, 애완동물용	5,000
		수산동물용	10,000
		가금용, 양축용(어린 반추동물에 한함), 섬유질(어린 반추동물에 한함)	20,000
		반추동물용(양축용·섬유질의 어린 반추동물용 제외)	50,000
		기타 배합사료(프리믹스용 제외)	30,000
	단미사료	식물성, 혼합성(식물성이 혼합된 것에 한함), 남은음식물사료	60,000
T-2/HT-2	배합사료	전체 배합사료	250
	단미사료	귀리, 귀리 가공품 및 씨라기	2,000
		기타 식물성, 혼합성(식물성이 혼합된 것에 한함), 남은음식물사료	500

* 상기 관리를 권고하는 곰팡이독소의 범위와 권고기준은 사료 내 기준과 규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사료 이용·구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가 사료의 품질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참고 사항이다.

3. 관리대상 주요 잔류농약

농약명	적용 대상 사료 종류별 잔류허용 기준(ppm)									비고
	단미사료								배합사료	
	곡류						콩류	섬유질류		
	밀	보리	호밀	옥수수	귀리	수수				
2,4-디 (2,4-D)	0.5	0.5	0.5	0.5	0.5	0.5	0.5	400	0.5	
글리포세이트★ (Glyphosate)	5	5	0.2	5	5	5	200	500	5	글리포세이트 +설폰세이트
다이아지논★ (Diazinon)	5	5	5	5	5	5	-	10	5	
다이콧 (Diquat)	2	5	0.03	0.05	2	2	-	100	-	
델타메트린+ 트라로메트린 (Deltamethrin+Tralomethrin)	1	1	1	1	1	1	-	5	-	
디디티★ (DDT)	0.5	0.5	0.5	0.5	0.5	0.5	-	0.5	0.5	pp'-DDT+ op'-DDT+ pp'-DDE +pp'-TDE (DDD)
디메테나미드-P (Dimethenamid-P)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	
디메토에이트★ (Dimethoate)	1	0.04	0.2	1	0.2	0.2	-	2	1	
디치오카바메이트 (Dithiocarbamates)	25	25	25	2	-	-	5	-	-	
디설포톤★ (Disulfoton)	5	3	5	3	0.05	-	-	10	4	
디캄바 (Dicamba)	50	50		0.6	3	8	-	200	-	
디크로보스★ (Dichlorvos,DDVP)	2	2	2	2	2	2	-	10	2	디크로보스+날레드
디페노코나졸 (Difenoconazole)	3	-	-	-	-	-	-	-	-	
디플루벤주론★ (Difflubenzuron)	1.5	1.5	1.5	1.5	1.5	1.5	40	3	6	
린단(감마-비에이치시) (Lindane,τ-BHC)	-	-	-	-	-	-	-	0.1	0.1	

농약명	적용 대상 사료 종류별 잔류허용 기준(ppm)									비고
	단미사료								배합사료	
	곡류						콩류	섬유질류		
	밀	보리	호밀	옥수수	귀리	수수				
마이클로부타닐 (Myclobutanil)	0.3	0.3	0.3	0.3	0.3	0.3	0.2	0.3	-	
말라티온★ (Malathion)	8	2	2	2	2	2	-	135	8	
메토밀★ (Methomyl)	5	10	10	10	10	10	0.2	20	10	
메토프렌★ (Methoprene)	5	5	5	5	5	5	5	0.01	5	
메톡시페노자이드 (Methoxyfenozide)	-	-	-	60	-	-	-	-	-	
메티다티온 (Methidathion)	0.02	0.02	0.02	0.1	0.2	0.2	-	12	-	
메티오카브★ (Methiocarb)	0.05	0.05	-	-	-	-	0.5	0.05	0.05	
벤타존 (Bentazone)	0.2	0.2	0.2	0.2	0.2	0.2	-	3	0.2	벤타존 +벤타존 소듐
보스칼리드 (Boscalid)	50	50	50	50	50	50	5	-	-	
비에치시 (BHC)	-	-	-	-	-	-	-	0.2	0.2	α-BHC+β-BHC +γ-BHC+ δ-BHC
비펜트린★ (Bifenthrin)	0.5	0.5	0.5	15	0.5	0.5	0.7	15	0.5	
사이클로시딴 (Cycloxydim)	-	-	-	2	-	-	-	-	-	
사이퍼메트린★ (Cypermethrin)	10	10	10	10	10	10	-	30	10	
사이프로디닐 (Cyprodinil)	10	10	10	10	10	10	-	10	-	
사이프로코나졸★ (Cyproconazole)	5	5	5	2	5	5	-	5	-	
사이플루트린 (Cyfluthrin)	2	2	2	2	2	2	4	-	-	
사이할로트린	0.2	0.2	0.2	0.2	0.2	0.2	4	0.6	-	

[illegible]

농약명	적용 대상 사료 종류별 잔류허용 기준(ppm)									비고
	단미사료								배합사료	
	곡류						콩류	섬유질류		
	밀	보리	호밀	옥수수	귀리	수수				
에톡사졸 (Etoxazole)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8	0.05	
에티온 (Ethion)	-	-	-	-	-	-	-	20	10	
엔드린 (Endrin)	-	-	-	-	-	-	-	0.01	0.01	
엠시피에이 (MCPA)	50	50	50	0.3	50	50	-	500	-	
옥시데메톤-메틸 (Oxydemeton-methyl)	0.1	0.1	0.1	-	-	-	-	-	-	
이마잘릴 (Imazalil)	0.1	-	-	-	-	-	-	-	-	
이미다클로프리드 (Imidacloprid)	1	1	1	0.2	1	1	30	0.5	-	
이피엔 (EPN)	-	-	-	-	-	-	-	0.5	0.5	
인독사카브 (Indoxacarb)	-	-	-	25	-	-	50	60	-	
카바릴★ (Carbaryl)	5	5	5	5	5	5	5	250	5	
카벤다짐★ (Carbendazim)	20	20	20	20	20	20	20	20	20	베노밀+카벤다짐 티오파네이트+티오파네이트 메틸
카보퓨란★ (Carbofuran)	0.2	0.2	0.2	0.2	0.2	0.2	-	13	0.2	카보퓨란+3-하이드록시카보퓨란
카탐 (Cartap)	0.2	0.2	0.2	0.2	0.2	0.2	-	5	-	벤선탐+카탐+티오사이클람
캡탄 (Captan)	-	-	-	10	-	-	-	50	-	

농약명	적용 대상 사료 종류별 잔류허용 기준(ppm)									비고
	단미사료								배합사료	
	곡류						콩류	섬유질류		
	밀	보리	호밀	옥수수	귀리	수수				
퀀토젠★ (Quintozene,PCNB)	0.03	0.01	-	0.01	-	-	0.05	0.03	0.02	
크레속심-메칠★ (Kresoxim-Methyl)	5	5	5	5	5	5	-	5	5	
클레토딤 (Clethodim)	0.1	0.1	0.1	0.1	0.1	0.1	-	10	-	
클로란트라닐리프로 (Chlorantraniliprole)	0.3	0.3	0.3	25	0.3	0.3	-	50	-	
클로로벤질레이트 (Chlorobenzilate)	-	-	-	0.02	-	-	-	-	-	
클로르페나피르 (Chlorfenapyr)	-	-	-	0.05	-	0.5	-	-	-	
클로르펜빈포스 (Chlorfenvinphos)	0.05	-	-	0.05	-	-	-	-	-	
클로르프로팜 (Chlorpropham)	0.05	0.05	0.05	0.05	-	-	-	-	-	
클로르피리포스★ (Chlorpyrifos)	5	0.5	10	0.5	2	0.75	-	13	2.5	
클로르피리포스-메틸★ (Chlorpyrifos-methyl)	10	6	7	7	10	10	-	6	6	
클로티아니딘 (Clothianidin)	0.2	0.2	0.2	0.01	0.01	0.01	0.2	-	-	
터브포스★ (Terbufos)	0.2	0.2	0.2	0.2	0.2	0.3	-	1	0.3	
테부코나졸 (Tebuconazole)	40	40	40	-	-	-	40	-	-	
테트라코나졸 (Tetraconazole)	-	-	-	0.01	-	-	0.2	1.1	-	
트리사이클라졸★ (Tricyclazole)	0.02	0.02	0.02	0.02	0.02	0.02	-	15	-	
트리아디메놀 (Triadimenol)	5	5	5	5	5	5	-	-	-	
트리아디메폰	5	5	5	5	5	5	-	-	-	

농약명	적용 대상 사료 종류별 잔류허용 기준(ppm)									비고
	단미사료								배합사료	
	곡류						콩류	섬유질류		
	밀	보리	호밀	옥수수	귀리	수수				
(Triadimefon)										
트리플록시스트로빈 (Trifloxystrobin)	5	7	-	10	-	-	5	-	-	
티아벤다졸 (Thiabendazole)	5	-	-	-	-	-	-	5	5	
티아크로프리드 (Thiacloprid)	5	-	-	-	-	-	-	-	-	
파라티온 (Parathion)	1	1	1	1	1	1	-	5	1	
패러콧 (Paraquat)	0.05	0.05	10	0.1	0.5	0.5	-	5	1	
퍼메트린★ (Permethrin)	10	10	10	10	10	10	50	55	10	
페나리몰 (Fenarimol)	-	-	-	5	-	-	-	-	-	
페노뷰카브 (Fenobucarb)	0.3	0.3	0.3	0.3	0.3	0.3	-	10	1	
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MEP)	6	6	6	6	6	6	-	10	6	
펜디메탈린 (Pendimethalin)	0.2	0.2	0.2	0.2	0.1	0.1	-	15	-	
펜발러레이트 (Fenvalerate)	-	-	-	-	-	-	-	13	5	펜발러레이트 +에스펜발러레이트
펜뷰코나졸 (Fenbuconazole)	3	3	-	-	-	-	15	-	-	
펜토에이트★ (Phenthoate)	1	1	1	1	1	1	-	10	1	
펜티온★ (Fenthion)	-	-	-	5	-	-	-	5	1	
펜프로파스린 (Fenpropathrin)	-	-	-	-	-	-	-	20	-	
포레이트 (Phorate)	0.05	0.05	0.05	0.05	0.05	0.05	-	1.5	-	

농약명	적용 대상 사료 종류별 잔류허용 기준(ppm)									비고
	단미사료								배합사료	
	곡류						콩류	섬유질류		
	밀	보리	호밀	옥수수	귀리	수수				
포스멧 (Phosmet)	0.05	0.05	0.05	0.05	0.05	0.05	-	40	-	
푸루실라졸★ (Flusilazole)	5	5	5	5	5	5	5	5	5	
프로클로라즈★ (Prochloraz)	40	40	40	40	40	40	-	40	40	
프로티오코나졸 (Prothioconazole)	5	5	5	5	5	5	-	4	-	
프로피코나졸★ (Propiconazole)	2	2	2	-	-	-	5	18	2	
플루디옥소닐 (Fludioxonil)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	
플루벤디아마이드 (Flubendiamide)	-	-	-	-	-	-	60	-	-	
플루오피콜라이드 (Fluopicolide)	0.2	0.2	0.2	0.2	0.2	0.2	0.2	0.2	-	
플루트리아폴 (Flutriafol)	8	-	-	-	-	-	20	-	-	
플루페녹수론 (Flufenoxuron)	-	-	-	0.05	-	-	-	-	-	
플룩사피록사드 (Fluxapyroxad)	30	30	30	15	30	30	30	-	-	
피라크로스트로빈 (Pyraclostrobin)	30	30	30	30	30	30	40	30	-	
피레트린 (Pyrethrins)	-	-	-	-	-	-	1	-	-	
피리다벤 (Pyridaben)	-	-	-	-	-	-	-	-	0.01	
피리메타닐 (Pyrimethanil)	-	-	-	-	-	-	3	-	-	
피리미카브★ (Pirimicarb)	0.3	0.3	0.3	0.3	0.3	0.3	60	0.3	6	
피리미포스-메틸★ (Pirimiphos-methyl)	5	5	5	5	5	5	-	5	5	
피페로닐부톡사이드★ (Piperonylbutoxide)	24	24	24	24	24	24	200	-	-	

농약명	적용 대상 사료 종류별 잔류허용 기준(ppm)								비고	
	단미사료						배합사료			
	곡류							콩류		섬유질류
	밀	보리	호밀	옥수수	귀리	수수				
피프로닐 (Fipronil)	-	-	-	0.1	-	-	-	0.2	0.02	
할록시포프 (Haloxypop)	-	-	-	-	-	-	5	-	-	
헵타클로르★ (Heptachlor)	-	-	-	-	-	-	-	0.02	0.02	

* ★ 표시는 상시관리대상 품목이며, 그 외 농약은 필요한 경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료(-)는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불검출 기준은 0.01 mg/kg으로 한다.

- 곡류·콩류(① Codex 기준 ②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3의 해당 농산물 또는 유사작물의 허용 기준)
- 섬유질류(① Codex 기준 ② [별표 20] 사료용 볏짚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 배합사료(사용한 원료사료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사료 내 배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섬유질류 배합사료는 양축용 배합사료 및 섬유질류 사용비율 또는 사용한 원료사료의 사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상기 범위에 기준이 없는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당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ADI), 가축의 해당사료 섭취량 등 관련 자료를 축산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여 종합 판정할 수 있다.

4. 관리대상 주요 방사능

구분	축 종	사 료 의 종 류	허용기준 (Bq/kg, L)
세슘 (Cs ¹³⁴ +Cs ¹³⁷)	고기소, 젓소, 말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100.0
	돼지		80.0
	가금류(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 등)		160.0
	양식용 수산동물		40.0
	기타		100.0
요오드 (I ¹³¹)	전체		300.0

5. 관리대상 주요 기타 성분

유해물질명	사료의 종류		허용기준
유리고시폴	단미사료	면실박, 혼합성 단미사료	1,200 ppm
정산	단미사료	타피오카, 혼합성 단미사료	50 ppm
살모넬라	배합사료	닭, 오리, 메추리, 실험용 동물, 애완용 동물, 사육하는 동물	불검출

유해물질명	사료의 종류		허용기준
(D그룹)	단미사료	낙농가공부산물류, 남은음식물사료, 동물성단백질류, 동물성무기물류, 박류(야자박, 채종박), 혼합성 단미사료, 화분	
세균 및 대장균군	단미·보조·배합사료	수분 14% 초과 ~ 60% 이하 사료와 동물성단백질류를 포함하지 않은 냉동 사료 : 세균 및 대장균군	별표 10의2 기준

6. 사용이 금지된 주요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하위 고시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 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사료 내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불검출 기준은 사료표준분석방법의 정량한계와 0.01 ppm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가. 무기비소제제

나. 피리메타민제제

다. 항갑상선물질

라. 성장촉진호르몬제

마. 니트로후란제제(후라졸리돈, 후랄타돈, 니트로푸라존, 니트로빈 및 니트로푸란토인 등)

바. 클로람페니콜 제제

사. 디메트리다졸

아. 기타 발암성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당펩타이드계 항생제(아보파신, 반코마이신 등), 클로르프로마진, 클렌부테롤, 이프로니다졸, 말라카이트그린, 콜치신, 스트리키닌, 디에칠스틸베스트롤, 유기염소제 및 클로르포름 함유제제.

자. 카바독스, 로니다졸, 올라퀸독스, 답손 및 메트로니다졸 함유제제

7.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먹는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유해물질로 분류한 물질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8. 이 고시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잠정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물질별 관련 자료와 선진외국의 엄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할 수 있다.